

심사보고서

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

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87
----------	-----

2023. 1. 19.(목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1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월 18일

-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신성영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자를 도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개선
- 신청자격 확대로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질병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사업내용 : 금융기관(농협)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
- 채 권 자 : 농협은행(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- 주채무자 : 의료비후불제 용자금을 받은 도민
 - (현행)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, 장애인
 - (변경) 65세 이상인 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, 장애인
- 용자금액 : 25억원(농협정책자금)
- 용자조건 : 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
- 보증기간 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- 보증범위 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
(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(이하 "본 동의안"이라 함)은
 -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따른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,
 - 「지방재정법」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되는 바,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자를 도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완화하려는 것임.

※ 사업대상자 확대(안) : 112,358명 → 440,549명(증 328,191명)

현 행	변 경 안 * 중복인원 제거
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31,915명)	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
②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(10,311명)	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
③ 만 65세 이상 장애인(50,195명)	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
④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(19,937명)	④ 장애인(47,012명)
	⑤ 국가유공자(6,501명)

- 본 동의안에 따른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자의 확대는 도내 거주하는 보다 많은 수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치료를 받아 기대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바 타당한 조치로 판단 됨.
- 다만, 본 변경 동의안에 따라 사업대상이 현행 112,358명에서 440,549명으로 4배 정도 확대됨에도 불구하고, 이에 따른 사업비(2,500백만원)와 사업량(830명^(최소)~5,000명^(최대))은 증액 및 확대 없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과 동일하게 제출되었음.
 - 물론, 본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적 성격의 사업인 만큼 실제 신청자 규모의 추계가 어렵다는 점, 과도한 예산추계로 인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사업비와 사업량을 증액 및 확대하지 않은 점은 이해되나, 이후 사업 시행

과정에서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, 추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「지방재정법」 제 13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그 취지 및 내용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본 사업은 시범사업인 만큼 철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.
 - 특히, 도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대상 수술(시술)의 추가 발굴 및 도 내 시·군 간 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서비스 대상 병원의 추가 발굴을 위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」

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

의안
번호

187

제출연월일 : 2023년 1월 6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자를 도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보훈대상자는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개선
- 신청자격 확대로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질병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사업내용 : 금융기관(농협)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
- 채권자 : NH농협은행(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- 주채무자 :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은 도민
 - (현행)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, 장애인
 - (변경) 65세 이상인 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, 장애인
- 융자금액 : 25억원(농협정책자금)
- 융자조건 : 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
- 보증기간 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- 보증범위 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
(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)

3. 참고사항

-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사업대상 확대 계획(안)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 임

5. 기타 : 해당없음

□ 필요성

- 신청자격 확대로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질병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위치 : 81개소(농협 충북영업본부, 종합병원 12, 치과병·의원 68)
- 사업대상 확대(안) : 112,358명 → 440,549명(증 328,191명)

현 행	확 대(안) * 중복제거
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31,915명)	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
②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(10,311명)	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
③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(19,937명)	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
④ 만 65세 이상 장애인(50,195명)	④ 국가유공자(6,501명)
	⑤ 장애인(47,012명)

- 대상수술 : 임플란트 식립, 슬관절·고관절 인공관절, 척추 및 심·뇌혈관 수술(시술)
- 사업비 : 2,500백만원(농협 정책자금)
- 도비소요액 : 923백만원(농협 정책자금 이자 및 미상환금 보전)
 - 미상환금 등 보전 : 773백만원(미상환율 30% 적용)
 - 이 자 보 전 : 150백만원(연이율 6% 적용) ※ 1.6. 현재 5.72%
- 대출한도 : 1인 50~300만원 / 3년간 무이자 상환
- 사업량 : 830명^(최소)~5,000명^(최대)
- 사업내용
 - 의료취약층의 의료비를 대납(농협)하고, 환자의 여건에 따라 무이자 장기 할부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비 부담 최소화
 - 도에서는 의료비 대출자금(농협)에 대한 미상환액 및 이자 보전

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

- 의료비후불제 및 착한은행 설립 관련 유관기관 등 자문 : 수시
-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의뢰 : '22.06.
- 주요병원장 등 간담회(인수위) : '22.06.
- VIP주재 시·도지사 간담회 정부 협조 건의 : '22.07.
- 의료비 후불제 TF팀 구성(팀장배치 9.3.) : '22.07.
-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(3회) : '22.08.
-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완료 : '22.09.
- 참여기관(의료기관, 농협 등) 간담회 : '22.10.
-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: '22.10.
-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(보건복지부) : '22.10.
-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 : '22.10.
- 도의회 채무보증 동의안, 조례제정안 의결 : '22.12.
- 시범사업 운영지침 수립 : '22.12.
- 의료비후불제 참여기관 협약 : '22.12.
-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: '23.01.
-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추진(보건복지부) : '23.01.
-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 확대 시행 : '23.02.

□ 他 제도와 차별성

- 기존의 무상지원제도와는 달리 정책수요자의 사회적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(융자금 상환) 부여

□ 기대효과

- 적기에 질병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(영양공급 및 사회적·정서적 안정 등) 및 기대수명 연장 제고
-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하여 다른 어려운 도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(善循環)적 의료복지제도 정착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(이하 “주채무”라 한다)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□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

제3조(채무보증의 승인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

제6조(지원내용)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보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(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“용자금”이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채무보증)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용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.